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238
----------	-------

발의연월일 : 2019. 12. 10.

발의자 : 이만희 · 김석기 · 민경욱
추경호 · 정종섭 · 송언석
이장우 · 최연혜 · 송희경
안상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낙농산업의 구조 개선, 원유(原乳)와 유제품(乳製品)의 수급(需給) 조절, 가격 안정과 유통 구조의 개선 등을 통하여 낙농업과 낙농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낙농업이 처해진 현실 진단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낙농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사항도 포함시켜 낙농업의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호 신설).

낙농진홍법 일부개정법률안

낙농진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낙농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u>1. ~ 7. (생 략)</u></p> <p><u>② · ③ (생 략)</u></p>	<p>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① - ----- ----- -----. <u>1. 낙농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u> <u>2. ~ 8. (현행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u> <u>② · ③ (현행과 같음)</u></p>